

# 등록 박물관·미술관 세제혜택 내용

(2015.12.1. 기준)

구분	세제혜택	근거	비고
설립 시 세제 혜택 (설립지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박물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산지관리법」 제23조	
운영 시 세제 혜택 (운영지원)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7호	등록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교육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6호(아래 *참고)	등록박물관·미술관
<p>*참고: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해당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p>			

구분	세제혜택	근거	비고
	박물관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대한 수입승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록한 박물관(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 등에 유증이나, 「문화재보호법」상의 토지 등을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등록한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등록 자료는 상속세·증여세 징수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비용 대상 문화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박물관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90조	박물관
	계약전력 4kW이상으로 교육용 전력 요금을 적용받는 전기료 할인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약관 제58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전시설 대상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 국영 수송기관에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수송을 맡길 경우 운임 등 기타요금의 할인 및 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박물관·미술관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	『지방세특례제한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

구분	세제혜택	근거	비고
	설세' 면제	제44조	물관